소규모 합병 공고

국도화학㈜는 국도첨단소재㈜와 2024년 7월 17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- 아 래 -

1. 합병방법 : 국도화학㈜가 국도첨단소재㈜를 흡수합병 함

2. 합병비율 : 국도화학㈜ : 국도첨단소재㈜ = 1 : 0(무증자합병)

3. 소멸회사의 현황
   가. 상호 : 국도첨단소재 주식회사
   나. 본사 소재지 :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청원산단 3 길 117

4. 합병기일 : 2024년 10월 1일(예정)

5. 국도화학㈜와 국도첨단소재㈜와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

6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   가. 행사절차 : 2024년 7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[별첨]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
   나. 제출기간 : 2024년 7월 31일 ~ 2024년 8월 14일
   다. 행사방법 및 장소
   1) 특별계좌(명부)주주 : 2024년 8월 14일까지 국도화학㈜ 재경그룹에 제출(☎ 02-3282-1542)
   2) 일반계좌(실질) 주주 : 2024년 8월 11일까지(※특별계좌(명부)주주보다 3일전)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
   (단, 제출 기한은 거래 증권회사 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제출 기한 및 절차는 해당 증권회사에 문의 요망)
   라.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
   마.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 시 주총 승인을 얻어야 함

[별첨]

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

국도화학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

본인은 국도화학㈜와 국도첨단소재㈜와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.

주 주 번 호		주 주 명	
소유주식의 종류		소유주식수	

2024년 월 일

성명 : (인)

주민(사업자)등록번호 :

주소 :

전화번호 :

2024년 7월 31일

국도화학㈜ 대표이사 이시창